

창원지방법원 2021. 11. 23 선고 2020가단12304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경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주현빈

피고A

변론 종결2021. 10. 19.

판결 선고2021.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3.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9. 12. 3. 접수 제59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B(이하, 채무자)는 2017. 3. 9. C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대출로 30,000,000원을 대출을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의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0,000원으로 정하여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2019. 11. 21. 채무자의 원리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대위변제금 잔액 및 그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10%,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60,166원이다.

1	C은행	D	2020-06-03	20,943,249	197,669	21,140,918
---	-----	---	------------	------------	---------	------------

다.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13. 피고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9. 12. 3. 접수 제598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대출금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채권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21,140,918원, 법적절차비용 60,166원, 합계 21,201,084원 및 그 중 21,140,91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6.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대위변제일인 2020. 6. 3. 발생하였다.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1. 13. 이후 성립하였으나, 신용보증약정이 2017. 3. 9. 체결되었으므로, 매매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2019. 11. 2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원고는, 채무자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는 아니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고, 이는 적극재산 감소로 인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주장한다.

(2)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1. 13. 기준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약 738,691,000원(대출거래정보 361,691,000원, 기업정보일보 377,000,000원)이고,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시가 437,000,000원 및 창원시 의창구 E빌딩 지하 1층 F호(이하, E빌딩 상가) 시가 620,000,000원(2020. 5. 8. 기준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가액에 의한다)으로, 합계 1,057,000,000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였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소극재산 738,691,000원 내역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주식회사 G, 채권최고액 283,200,000원, 360,000,000원, 74,400,000원 3건)의 원금 채권액 316,935,626원, 피고가 채무자에게 2015. 3. 5. 5천만 원, 2017. 1. 4. 5천만 원을 송금한 대여금 1억 원 및 E빌딩 상가의 연체 관리비 1,800만 원 상당이 있다.

③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피고의 채권 1억 원이 대물변제되었고, G의 원금채권 316,935,626원(이자 채권을 합하면 이를 초과함)은 원고의 피보전채권 성립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되던 채무로서 피고가 물상보증인이 되어 여전히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으로 담보된다. 여기에 E빌딩 상가 연체 관리비에 기하여 2019. 9. 17. 이 사건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는데, 피고가 2019. 12. 19.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④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채무자의 소극재산 역시 감소하여 채무자의 적극재산 E빌딩 상가 620,000,000원으로 담보되는 소극재산은 303,755,374원(= 738,691,000원 - 316,935,626원 - 100,000,000원 - 18,000,000원)이 되므로, 채무초과 상태로 볼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하거나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판사문선주

별지